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

충청북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 627 2024. 7. 15.(월) 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24년 7월 3일

다. 회부일자 : 2024년 7월 3일

라. 상정일자 : 2024년 7월 15일

- 제4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수정의결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)

가. 제안사유

- 「국가유산기본법」 및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- 도지정자연유산 등의 조사심의를 수행하게 될 충청북도 자연유산 위원회의 조직, 분장사항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 자연유산자료가 신설됨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의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, 제2조)
- O 충청북도 자연유산위원회 설치 및 기능 (안 제5조, 제6조)

- 도지정문화유산, 자연유산자료의 지정 및 해제 (안 제16조, 제22조, 제24조)
- 도지정자연유산의 관리 (안 제25조, 제26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신복순)

가. 제정 필요성

- 본 제정 조례안은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 (2023.3.21.)되어 시행(2024.5.17.)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자연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근거가 타당함.
- 그동안 「문화재보호법」, 「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」에 따라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하여 멸실· 훼손을 방지하는 등 자연유산을 보호하였으나, 자연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현행 제도와 규제 중심의 보호정책의 한계가 있었음.
- 정부에서 국가유산체제를 정비하여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법률인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을 제정하여 자연유산을 특성에 맞도록 보호·보존·관리·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고, 이를 도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안 조문 검토

○ 본 조례안은 제1조(목적)부터 제45조(청문)까지 총 5장 44개 조 문과(제4장의 경우 3개 절로 구성) 부칙 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 으나, 제5장 보칙 제44조가 누락 되어 있음.

< 조 문 체 계 >

구 분		조 문		
제1	장	제1조 목적 제2조 정의		
총칙		제3조 도지사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		
		제5조 설치		
		제6조 기능 제7조 구성		
제2		제8조 위원 임기		
충청· 자연유신		제9조 위원장 등 제10조 전문위원		
		제11조 분과위원회		
		제12조 간사 등 제13조 위원회 운영 및 위원의 해촉·제척 등		
제3 자연유산 정책 수립 5	보호의	제14조 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 수립 제15조 자연유산 관련 기관·단체의 지원		
	제1절 지정 및 해제	제16조 도지정자연유산의 지정 제17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제18조 지정에 관한 자료 제출 제19조 지정 고시 및 통지 제20조 지정의 교부 제21조 지정의 효력발생 시기 제22조 지정의 해제 제23조 임시지정 제24조 자연유산자료의 지정		
제4장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	제2절 관리	제25조 관리자의 선임 등 제26조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제27조 허가사항 제28조 허가기준 제29조 허가사항의 취소 제30조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요건 등 제31조 신고사항 제32조 행정명령 제33조 건설공사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제34조 기록의 작성·보존 제35조 보조금 제36조 손실의 보상 제37조 시·군의 경비부담		

구 분		조 문
		제38조 준용
	제3절	제39조 도지정자연유산의 공개 등
		제40조 정기조사
	공개 및 조사	제41조 직권에 의한 조사
제5장 보칙		제42조 충청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준용 제43조 권한의 위임 제45조 청문
H+I		제1조 시행일 제2조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
부칙		제3조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

- 제1장 총칙 관련 안 제1조 ~ 안 제4조는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「자연유산법」이라 함)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,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, 자연유산의 보존·관리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.
- 제2장 충청북도 자연유산위원회 관련 안 제5조 ~ 안 제13조는 「자연유산법」 제41조의2에 따라 자연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사항을 조사·심의 하기 위해 '충청북도 자연유산위원회'를 설치하고, 위원회 기능, 구성, 위원의 임기, 위원장, 전문위원, 분과위원회, 간사, 위원회 운영과 위원의 해촉·제척 규정을 마련하였음.
- 제3장 자연유산 보호의 정책 수립 및 기반조성 관련 안 제14조 ~ 안 제15조는 도지사는 「자연유산법」 제7조에 따라 연도별 자연 유산 보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으며, 시행계획 에는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고, 자연유산 보존·관리 및 활용을 위해 관련 단체를 지원·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.

- O 제4장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는 총 3개 절로 구성되어 있음.
 - 제1절 지정 및 해제 관련 안 제16조 ~ 안 제24조는 도지정자연유 산, 도자연유산자료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 절차, 보호물 또는 보 호구역의 지정 기준과 적정성 검토 절차와 지정 관련 자료의 제 출 및 지정 고시 및 통지, 지정서 교부, 지정의 효력 발생시기, 임 시지정, 지정의 해제 절차 등을 규정하였음.
 - 제2절 관리 관련 안 제25조 ~ 제38조는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보존·관리를 위한 규정으로서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허가와 관련한 사항, 기준, 허가 사항의 취소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음.
 - 또한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요건 및 절차,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소유자, 관리자, 관리단체의 신고 사항과 도지사의 행정명령 사유, 건설공사 시 보존지역의 보호와 관련한 기준 및 절차, 보조금 지급, 손실의 보상, 시·군의 경비부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였음.
 - 제3절 공개 및 조사 관련 안 제39조 ~ 안 제41조는 도지정자연유 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공개원칙과 공개제한 고시 및 해제, 공개 제한된 자연유산의 출입허가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, 상위법에 따른 정기조사의 시기, 고려사항 및 내용 등을 규정하고 도지정 자연유산등의 정기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구체화 및 도지 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에 의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○ 제5장 보칙 관련 안 제42조 ~ 안 제45조는 자연유산의 화재예방 및 재난방지 등, 매장유산의 공고 등에 관해서는 「충청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」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했으며, 시장·군수에게 위임할 권한 사항과 허가 취소의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음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이 시행 (2024.5.17.)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자연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가 타당함.
- 자연유산을 특성에 맞도록 보호·보존·관리·활용할 수 있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도 차원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 하는 것으로 제정 필요성이 인정되며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 됨.
- 조례안의 주요 내용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고,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'법령우위원칙'과 '법률유보원칙'을 준수하여 제정된 것으로 판단 됨.
- 조례 시행 이후 충청북도는 자연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의 수립·시행 및 각종 개발사업 계획·시행 시 자연유산과 그 보호물·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.
- 다만, 조례 형식상의 문제로 안 제44조가 단순 누락 또는 오기로 안 제45조(청문)으로 표기되었다고 판단되므로 "제45조(청문)"을 "제44조(청문)"으로 수정해야 함.

제 정 안	수 정 안
<u>제45조(청문)</u> 제2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	<u>제44조</u> (청문)
자가 그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	
반한 때 그 허가를 취소하고자하는 경	
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	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"생략"

5. 토 론 요 지: "생략"

6. 심 사 결 과: "수정의결"

7. 수정안 요지

충청북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"제45조(청문)"을 "제44조(청문)"으로 한다.

- 8. 기타 필요한 사항: "없음"
- 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 - O 「충청북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」(원안)
 - O 「충청북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」(수정안)

충청북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북도의 역사적·학술적· 경관적 가치가 있는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·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자연유산"이란 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3조제3호에 따른다.
- 2. "충청북도 지정자연유산"이란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항의 자연유산 중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가 국가지정자연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연유산을 말한다.
- 3. "충청북도 자연유산자료"란 국가지정자연유산과 충청북도 지정자연유산 (이하 "도지정자연유산"이라 한다)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유산 중에 도지사가 향토자연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.
- 4. "보호물"이란 도지정자연유산 및 충청북도 자연유산자료(이하 "자연유산자료"라 한다)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.
- 5. "보호구역"이란 일정한 지역이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로 지정

- 된 경우 지정된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해당 도지정자연유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.
- 6. "건설공사"란 토목공사, 건축공사, 조경공사와 토지의 원형 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말한다.
- 7. "역사문화환경"이란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·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.
- 제3조(도지사 등의 책무)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자연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- ② 도지사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자연유산과 자연유산의 보호물·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자연유산의 소유자,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자연유산의 보존·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.
- 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자연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2장 충청북도 자연유산위원회
- 제5조(설치)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·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자연유산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제6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·심의한다.

- 1. 도지정자연유산과 자연유산자료의 지정과 그 해제
- 2. 도지정자연유산과 자연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
- 3. 도지정자연유산과 자연유산자료의 현상변경 허가
- 4. 도지정자연유산과 자연유산자료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위의 제한·금지나 시설의 설치·제거·이전 등의 명령
- 5. 도지정자연유산과 자연유산자료의 보존·관리와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인 사항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6. 법 제41조의2에 따른 관할구역에 있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지정 및 해제 요청에 관한 사항
- 7. 그 밖에 자연유산의 관리와 활용 등에 관하여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
- 제7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다.
 - 1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자연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 수 이상의 지위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
 - 2.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
 - 3. 동·식물학, 지질학, 지구과학, 조경학, 인류학, 민속학, 보존과학, 국가유 산관리학 등 자연유산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

자연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

- 제8조(위원 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 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제9조(위원장 등)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 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.
 -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10조(전문위원) ① 위원회에 20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, 각 분과위원회별 전문위원의 수는 도지사가 정한다.
 -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.
 - 1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자연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 수 이상의 지위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
 - 2. 자연유산 보존·관리·활용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
 - 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 - ④ 전문위원은 전문사항의 자료수집·조사·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고 자연유산의 보존·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자문할 수 있으며,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- 제11조(분과위원회) ① 제6조에 따른 사항을 자연유산의 종별에 따라 분장하여 조사·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- ②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.

- ③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한다.
- ④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를 따른다.
- 제12조(간사 등)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.
 - ② 간사는 자연유산 담당 과장이 되고, 서기는 자연유산 담당 주무관이 된다.
 - ③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,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.
- 제13조(위원회의 운영 및 위원의 해촉·제척 등) ① 위원회의 회의, 회의록 작성, 관계자의 의견 청취,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문화유 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」(이하 "문화유산조례"라 한다) 제10조, 제 12조. 제15조. 제16조를 준용한다.
 - ② 위원회 위원의 해촉과 제척·기피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유산조례 제13 조 및 제14조을 준용한다.
- 제3장 자연유산 보호의 정책 수립 및 기반조성
- 제14조(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 수립)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보호계획이 수립되면 이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다만, 시행계획에는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"영이라 한다") 제3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위하여 시장·군수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 - ③ 도지사 및 시장・군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.

- ④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과 그 시행 결과의 제출 대상, 시기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따로 정한다.
- 제15조(자연유산 관련 기관·단체의 지원) 도지사는 자연유산 보존·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관련 단체를 지원·육성할 수 있다.

제4장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

제1절 지정 및 해제

- 제16조(도지정자연유산의 지정) ① 도지사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는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정자연유산으로 지정한다.
 - ② 도지정자연유산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.
- 제17조(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) ① 도지사는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유산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있다.
 - ② 도지사는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이나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.
 -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또는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.

- 1. 해당 자연유산의 보존가치
- 2.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
- 3.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
- ④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시기 연기에 관해서는 문화유산조 례 제24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문화유산"은 "자연유산"으로 본다.
- 제18조(지정에 관한 자료 제출) 시장·군수는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연유산이 있을 때에는 사진, 도면과 녹음물 등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그 취지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9조(지정 고시 및 통지) ①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(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를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를 도보에 고시 하고, 해당 자연유산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.
 - ② 제1항의 경우 그 자연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.
- 제20조(지정서의 교부)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를 지정하면 그 소유 자에게 해당 자연유산의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. 이 경우에 해당 자연유 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교부 할 수 있다.
- 제21조(지정의 효력발생 시기)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지정은 해당 자연유산의 소유자,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통지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고, 그 밖의 자에 대하여는 도보에 고시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.

- 제22조(지정의 해제)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, 제42조에 따라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가 자연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지정 해제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요청을 받은 자는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(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)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제1항 지정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예고하여야 한다.
 -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 - ⑤ 도지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4항에 따른 지정 해제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해제 등의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3항에 따른 예고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해제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.
 - ⑥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연유산의 지정 해제한 때에는 그 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, 해당 자연유산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효력의 발생 시기에 대해서는 제21조에 따른다.
 - ⑦ 제17조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하며,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

산자료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자연유산의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.

- ⑧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소유자는 제6항에 따른 해제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연유산 지정서를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- ⑨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가 천연기념물 및 명승으로 지정된 때에는 지정된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.
- 제23조(임시지정) ① 도지사는 도지정자연유산으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연유산이 지정 전에 원형 보존을 위하여 시급히 지정할 필요가 있고,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도지정자연유산으로 임시지정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지정한 자연유산 소유자, 점유자나 관리자에게 지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, 그 효력은 통지한 날부터 발생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은 임시지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6조에 따른 지정이 없으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.
 - ④ 제1항에 관하여는 제16조와 제20조를 준용하되, 제19조제1항에 따른 도보의 고시는 하지 아니한다.
- 제24조(자연유산자료의 지정) 도지사는 도지정자연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유산 중 향토자연 보존상 가치가 있는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연유산자료로 지정한다.

제2절 관리

- 제25조(관리자의 선임 등) ①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해당 자연유산을 보존・관리하여야 한다.
 - ②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에 대하여 그 자연유산을 보존·관리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.
- 제26조(관리단체에 의한 관리) ① 도지사는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·군이나 그 자연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(이하 "관리단체"라 한다)를 지정하여 해당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시·군이나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 의견청취 절차, 고시와 통지, 소유자·관리자의 의무, 경비부담, 지정의 효력 시기에 대해서는 문화유산조례 제33조제2항부터 제6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도지정문화유산"은 "도지정자연유산"으로 "문화유산자료"는 "자연유산자료"로 본다.
- 제27조(허가사항)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 - 1.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로 지정 또는 임시지정된 구역이나 그 보호구역 안에서 동물·식물·광물을 포획·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
 - 2.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를 탁본 또는 촬영하거나 보존에

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

- 3. 도지정자연유산, 자연유산자료(보호물·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)의 현상을 변경(자연유산을 표본, 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)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행위
- 제28조(허가기준) 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.
 - 1. 자연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
 - 2. 자연유산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
- 3. 자연유산 보호계획과 제1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수립되어 있을 것 제29조(허가사항의 취소) ① 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 - 1.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
 - 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
 - 3.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② 제2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착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기간이지난 때에는 그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.
- 제30조(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요건 등) ① 도지사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구조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로 지정할 수 있다.

- 1. 「수의사법」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개설하고 있는 동물병원
- 2. 「수의사법」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소속직원으로 두고 있는 도의 축산 관련 기관
- 3. 「수의사법」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소속회원으로 두고 있는 관리단체나 동물보호단체
- ② 도지사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
- 3.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치료 중인 동물을 죽게 하거나 불구가 되게 한 경우
- 4.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치료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
- 5.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동물치료 경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
- 6.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지사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
-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동물치료소를 추천하려는 시·군의 장 또는 관리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추천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1. 수의사 면허증 사본
- 2.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(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)

-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추천된 자를 동물치료소로 지정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내주어야 하며, 별지 제3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 발급대장에 이에 관한 사항을 적고 발급대 장을 관리하여야 한다.
- ⑥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동물치료소지정서를 재교부 받으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1.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: 그 사유서
- 2.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못 쓰게 된 경우 : 해당 지정서
- 3. 동물치료소 지정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: 해당 지정서와 그 증빙서류
- 제31조(신고 사항)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(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소유자,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해당 자연유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사실과 경위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호의 경우에는 신·구 소유자가 각각 연서(連署)로 하여야 한다.
 - 1.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
 - 2. 소유자에 변경이 있는 경우
 - 3.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에 변경이 있는 경우
 - 4. 소재지의 지명ㆍ지번ㆍ지목ㆍ면적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

- 5. 보관 장소를 변경한 경우
- 6. 멸실 ·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
- 7. 제27조제1호에 따라 허가된 자연유산을 반출하거나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
- 8. 제27조제3호에 따라 허가(변경허가를 포함한다)를 받고 그 자연유산의 현상변경 그 밖의 행위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
- 9. 동·식물의 종(種)이 기념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일 이전에 표 본이나 박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
- 제32조(행정명령) ① 도지사는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(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관리·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.
 - 1. 관리상황이 그 자연유산의 보존에 부적당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, 관리자 및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제한
 - 2. 소유자, 관리자 및 관리단체에 의한 수리,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
 - 3. 소유자, 관리자 및 관리단체에 관한 자연유산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
 - 4.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동물·식물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
 - 5. 제27조 각 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

- 유산자료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행위의 중지 또는 워상회복 조치
-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「행정대집행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, 그 비용을 명령 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.
- ③ 시장·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정명령을 명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
- 제33조(건설공사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) ① 도지사, 시장·군수가 법 제10조에 따라 건설공사를 인·허가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도지정자연유산과 자연유산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각 호와 같다.
 - 1. 천연기념물 및 명승
 - 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과 관리지역,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외곽경계(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
 - 나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
- 2.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

- 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과 관리지역,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유산의 외곽경계로 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
- 나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자연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
- ② 제1항의 범위를 초과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라 하여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가 자연유산 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.
- 1.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의 수질오염을 초래하거나 수량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수계의 상류에서 행하여지는 건축공사 또는 제방축조 등의 공사
- 2. 자연유산 경관을 훼손하거나 또는 역사·문화·자연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설공사
- ③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인·허가를 행하는 도지사, 시장·군수는 그 건설공사에 대한 인·허가를 하기 전에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·증설하는 행위로서 자연유산 등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
- 2.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로서 자연유산 등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
- 3. 소음 진동 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 먼지 빛

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로서 자연유산 등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

- 4. 지하 50미터 이상의 땅파기 행위로서 자연유산 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
- 5. 토지·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자연유산 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
- 6. 그 밖에 자연유산 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
- ④ 도지사, 시장·군수는 건설공사 등의 인·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가 제1항에 따라 검토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하고,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·허가 신청서,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제3항에 따라 검토한 후 위원회 위원 등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,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⑤ 제3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가 자연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.
- 1.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자연유산이 국가지정자연유산인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의 허가(현상변경)를 받아야 한다.
- 2.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자연유산이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 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허가(현상변경)를 받아야 한다.
- 제34조(기록의 작성·보존) ① 도지사와 해당 시장·군수 및 관리단체의 장 은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에 대한 보존·관리 및 변경 사항 등

- 에 관한 기록을 작성 · 보존하여야 한다.
- ② 도지사는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보존·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연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연구기관에 도지정자연유산과 자연유산자료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.
- 제35조(보조금)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보조할 수 있다
 - 1. 제26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자연유산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
 - 2.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
 - 3.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도지정자연유산의 관리·보호, 수리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
 - 4. 제34조에 따른 기록의 작성 ·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
 - ② 제1항에 따른 보조를 하는 경우 그 자연유산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에 관하여 감독할 수 있다.
 - ③ 도지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·군수를 통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,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관리·사용하게 할 수 있다.
 - ④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절차·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- 제36조(손실의 보상)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.
 - 1. 제3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여 손실을 받은 자
 - 2. 제32조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

- 3. 제40조제4항에 따른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
- 4. 제41조제1항에 따른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
- ②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 산자료의 종류, 명칭, 수량, 소재지, 보관장소와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-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손실의 원인이 그 소유자, 관리자 및 관리단체가 책임질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손실액을 보상하여야 한다.
- 제37조(시·군의 경비부담) 시장·군수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에 대하여 그 보존·관리, 수리, 활용 또는 기록 작성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
- 제38조(준용) ① 임시지정자연유산의 관리와 보호에 관하여는 제27조, 제31 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6호부터 제8호까지, 제32조제1항, 제33조, 제36 조를 준용한다.

제3절 공개 및 조사

- 제39조(도지정자연유산의 공개 등) ①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자연유산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.
 - ②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자연유산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. 이 경우 도지사는 해당 자연유산의 소유자(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관리

단체를 말한다)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- ③ 제2항에 따라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공개를 제한하면 해당 자연유산이 있는 지역의 위치,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등을 도 보에 고시하고, 관할 시장·군수에게 알려야 한다.
- ④ 제2항에 따른 공개 제한의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제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도지사는 이를 도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장·군수에게 알려야 한다.
-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제40조(정기조사) ① 도지사는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보존· 관리 및 활용 현황 등에 관하여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.
 -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에 뚜렷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재조사를 명할 수있다.
 -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 개시 3일 전까지 자연유산의 소유자, 관리자 및 관리단체에 대하여 그 취지를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.
 -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소유자 등에게 자연유산의 공개, 현황자료의 제출, 자연유산 소재 장소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 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, 그 자연유산의 현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 위에서 측량・발굴・장애물의 제거, 표본채취,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행

- 위를 할 수 있다. 다만, 해뜨기 전이나 해진 뒤에는 소유자, 관리자 및 관리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⑤ 제4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신분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.
- ⑥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나 일부를 시장·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아래 각 호의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1. 자연유산 관련 조사, 연구, 교육, 수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
- 2. 「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생물자원관
- 3. 「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에 따른 해양생물 자원관
- 4. 「과학관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6조2에 따른 과학관
- 5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자연유산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
- 6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전문법인
- ⑦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·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1.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(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)의 지정과 그 해제

- 2.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수리, 복구 등의 보존조치
- 3. 도지정자연유산의 보존을 위한 행위의 제한·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· 제거와 이전
- 4.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
- 5. 그 밖에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
- 제41조(직권에 의한 조사)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보존·관리 현황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직권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통지, 조사의 협조 요구 및 조사에 필요한 행위 범위, 신분증 휴대 및 제시, 조사 행위에 대해서는 제4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

제5장 보칙

- 제42조(「충청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」의 준용) ① 자연유산의 화재예방 및 재난방지 등, 금연구역의 지정, 수리 등, 국가유산수리용역 시공평가, 관람료의 징수, 표창 등에 대해서는 문화유산조례 제18조, 제19조, 제40조, 제41조, 제48조, 제56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, "문화유산"은 "자연유산"으로 "도지정문화유산"은 "도지정자연유산"으로, "문화유산자료"로 본다.
 - ② 매장유산의 공고 등에 대해서는 문화유산조례 제52조를 준용한다. 이경우, "문화유산"은 "자연유산"으로 "도지정문화유산"은 "도지정자연유산"으로, "문화유산자료"는 "자연유산자료"로 본다.

- 제43조(권한의 위임)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장·군수에게 위임하다.
 - 1. 제26조에 따른 관리단체의 지정
 - 2. 제32조에 따른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소유자, 행위자 등에 대한 행정 명령 및 조치
 - 3.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경미한 수리
- 제45조(청문) 제2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그 허가를 취소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지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「충청북도 문화재보호 조례」제24조제1항 및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도지정문화재 및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중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1호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기념물은 제16조 및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로 본다.
- 제3조(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충청북도 문화 재 보호 조례」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자연유산에 관한 사항을 조사·심 의하도록 지명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 위원으로 본다.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에 따라 임명·위촉된 날을 기산일로 한다.

제4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하여 종전의 「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」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.

(앞쪽)

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추천서 (Same Parties of Same Part						
	30일					
	①기 관 명		②대 표 자			
추 천 인	③주 소					
	④전화번호		⑤전자메일			
	⑥기 관 명		⑦주 소			
に ロ 引 コ よ	⑧대 표 자		⑨생년월일			
동물치료소 추천대상	⑩전화번호		①전자메일			
	②수 의 사 면허번호		③수 의 사 면허일자			
「충청북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」제30조에 따라						
동물치료소를 추천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		
년 월 일						
추천인 시장·군수 [인] 추천인 국가지정유산관리단체의 장 [인]						
충청북도지사 귀하						
※ 구비서류 1.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수수료						
2.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(동물병원을 개설한 자의 경우에 한합니다) 없			없 음			

제 호

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

1. 기 관 명 :

2. 대 표 자 :

「충청북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」 제30조 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충청북도지사 [인]

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 발급대장

(1) T H	@7H	<u>ਿ</u> ਤੀ ਜੀ ਸੀ	الم إحمال		대	표 자	
①교부 번호	②교부 일자	③기관명	④지정일	⑤성 명	⑥생년월일	⑦수 의 사 면허번호	⑧면허일자

	처리기간					
		30일				
①지정번호			②지정일자			
	③기관명		④주 소			
신청기관	⑤대표자		⑥생년월일			
	⑦수의사 면허번호		⑧수 의 사 면허일자			
재교부사유	 □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□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못 쓰게 된 경우 □ 동물치료소 지정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					
「충청북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」 제30조에 따라 신청하오						
니 재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		
년 월 일						
신청인(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대표자) (서명 또는 인)						
충청북도지사 귀하						
※ 구비서류						
1.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: 그 사유서 2.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못 쓰게 된 경우: 해당 지정서 없음 없음 3. 동물치료소 지정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: 해당 지정서와 그 증빙서류 없음 음						

충청북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○ 효율적인 충청북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을 도모 하고자 함

2. 비용 발생 요인

○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한 필요한 사업비 지원

3. 관련조문

- 안 제3조(충청북도 자연유산위원회 설치) 자연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·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자연유산위원회를 둔다.
- 안 제36조(보조금)
 -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 - 1. 관리단체가 그 자연유산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
 - 2.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관리·보호에 조치에 필요한 경비
 - 3. 도지정자연유산의 관리 보호, 수리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
 - 4. 기록의 작성 ·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 5년간으로 함
- 추계기간(5년간)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
- 물가상승,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
- 조례안 제36조(보조금)에 의거 충청북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대한 비용 추계

나. 추계 결과 : 1,515,000천원

- 연 사업당 최대 300,000천원 소요 예상
- 연 자연유산위원회 최대 3,000천원 소요 예상

다. 재원조달방안 : 도비 50%, 시·군비 50%

※ 자연유산위원회 : 도비 100%

- 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- 6. 작성자 :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수인

〈 연도별 비용 추계표 〉

(단위 : 천원)

							(단위 : 선전)
구 분		1차년도 (2025년)	2차년도 (2026년)	3차년도 (2027년)	4차년도 (2028년)	5차년도 (2029년)	계
세 입							
	-	-	-	-	-	-	-
,	세 출	303,000	303,000	303,000	303,000	303,000	1,515,000
1	(안 3조) 면유산위원회 면3회 운영)	3,000	3,000	3,000	3,000	3,000	15,000
(안 36조) 보조금 자연유산 보존관리사업		300,000	300,000	300,000	300,000	300,000	1,500,036
	-	-	-	-	-	-	-
	재원 조달	303,000	303,000	303,000	303,000	303,000	1,515,000
	소 계	-	-	-	-	-	-
의존 재원	보조금	-	-	-	-	-	-
, –	지방교부세	-	-	-	-	-	-
	소 계	153,000	153,000	153,000	153,000	153,000	765,000
자체 수입	지방세	153,000	153,000	153,000	153,000	153,000	765,000
	세외수입	-	-	-	-	-	-
지방채		-	-	-	-	-	-
기 금		-	-	-	-	-	-
시군비		150,000	150,000	150,000	150,000	150,000	750,000
기 타 (차입금, 민자, 예비비, 자담 등)		-	-	-	-	-	-

.

관련 법 령

□ 국가유산기본법

제3조(정의) 제1항

①"국가유산"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·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·예술적·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·자연유산·무형유산을 말한다.

□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(정의)제4호

4. "시·도자연유산"이란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 아닌 자연유산 중 역사적·경관적·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40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가 지정하고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.

제10조(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) ① 시·도지사는 천연기념물등[종(種)으로 지정된 천연기념물등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.

② 건설공사의 인가·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 ·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·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천연기 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-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천연기념물등의 역사적·경관적·학술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천연기념물등 보호에 필요한 사항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로 한다. 다만, 천연기념물등의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천연기념물등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천연기념물등에 영향을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. ④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·도지사는 천연기념물등의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미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, 시·도지사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- 1.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·증설하는 행위로서 천연기념물등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
- 2.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로서 천연기념물등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
- 3. 소음·진동·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·화학물질·먼지·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로서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

- 4. 지하 50미터 이상의 땅파기 행위로서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줄수 있는 행위
- 5. 토지·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
- 6. 그 밖에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
- ⑤ 제4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검토는 생략한다.
- ⑥ 제2항에 따른 검토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 제40조(시·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지정) 제1항
- ① 시·도지사는 그 관할 구역에 있는 자연유산 중 제1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제12조에 따른 명승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·도자연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충청북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(수정안)

충청북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 같이 수정한다. "제45조(청문)"을 "제44조(청문)"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u>제45조(청문)</u> 제27조에 따라 허가를 받	<u>제44조</u> (청문)
은 자가 그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	
을 위반한 때 그 허가를 취소하고자	
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	
한다.	.